[산업간호와 법]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대통령령 제22807호)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1 제2호 중 "1천분의 9"를 "1천분의 11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고용보험요율)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실업급여의 보험요율: 1천분의 9	제12조(고용보험요율) ① --------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11